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환경 변화에 따른 — 산재보상 이슈 & 대응



김영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대부분의 국가에서 질병, 상해, 실업 그리고 노령을 4대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방식인 4대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위험 중 '상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다수의 국가들이 산재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이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사업주들에게는 재해 발생에 따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면서 산재보상에 따르는 일시적인 경영위험을 최소화해 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 시스템의 유지 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도입이 58년 경과한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촉발되고 코로나19가 더욱 가속화시킨 노동시장 구조·근로 형태 및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등이 산재보상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①산재 예방과 보상 연계 ②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재해예방과 보상의 연계 강화다.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의 연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3.35~5.9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¹⁾ 있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방과 보상을 분리 운영하면서 산재보험의 목적을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그리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산재 예방과 보상을 통합 운영하면서 장해나 질병을 예방하는 운영원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예방과 보상을 분리 운영하면서 산재보험의 목적을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그리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는 산재예방·보상제도 운영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유가 타칼라 전 EU 산업안전 보건청장 초청 강연 보도자료 (2022.04.28.)



산재예방과 보상연계를 강화하는 첫걸음은 그동안 축적된 산재보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 특정 계절 및 시간대, 특정 업종에서 어떤 유형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산재보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 발생 패턴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한다. 이후, 지역과 업종 유형에 따라 재해가 많이 발생한 직종을 대상으로 위험 노출이 많은 시기에 앞서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 등 사전 컨설팅을 통해 위험 노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산업현장에서는 산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사전에 형성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이다. 독일 산재보험의 재활 원칙은 ①보상 이전의 재활 ②모든 최적의 조치 ③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산재 노동자들의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과 노동능력 회복을 위한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금전적 보상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산재 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재활보다는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의 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 주체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업주를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다.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는 산재 노동자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업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재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²⁾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산재 노동자의 사회복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벗어나 경제력 회복과 재해 전 상태로의

2) 국제사회보장기구(ISSA), 재활 투자수익 : 고용주 3.7배, 사회보장기관 2.9배, 사회전반 2.8배(2017년 세계 50개국 75개 사회보장기관 조사)

일상 회복을 의미하고, 사업주에게는 숙련된 노동력의 유실을 막아 기술 경쟁력 보존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산재 재활이 갖는 특별함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현재 운영 중인 산재보상 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전제로 산재보상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이 방식으로는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비정규직(노무 제공자·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종속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8월 33%에서 2021년 8월 38.4%로 5.4%p 증가하였다.³⁾

‘업무상 재해 이전의 실질소득 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직된 평균임금을 업(業)에 기반한 실소득으로 전환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기준임금 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및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업무상 재해 이전의 실질소득 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직된 평균임금을 업(業)에 기반한 실소득으로 전환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기준임금 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및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예방 및 재활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 복지라는 보다 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계층을 위한 유연한 산재보상 제도 운용을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

3) 국세청, 근로 형태별 근로자 구성(2021.08)